

(붙임2)

학부 신입생 안전환경 신규교육

□ 배경

- 2006년에 제정된 ‘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’ (이하 ‘연안법’)에 서는 이공계대학 학부 신입생에게 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※ 법률 제18조,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(교육·훈련 등)

□ 내용

- 환경안전원에서는 홈페이지(<http://ieps.snu.ac.kr>)를 통한 사고사례와 안전교육 자료 등을 게시하여 학부 신입생 교육이 각 단과대학별로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
-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부 신입생에 대한 신규교육 2시간의 자체 교육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학과 중심의 실험 전 안전교육 등으로 실시하고, 교육 결과를 환경안전원에 제출함

○ 교육 방법

구분	신규 교육
교육 대상	학부 신입생
교육 시간	2시간 이상
교육 방법	①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또는 대학주관 자체 안전교육 실시 ② 학과 중심의 실험 전 안전교육 실시
교육 자료	안전교육 자료(PPT 등): 연구안전통합시스템(http://rsis.snu.ac.kr) 공지사항(학부생 교육자료)
교육 결과	교육 결과는 2021년 5월 31일(월)까지 공문 으로 환경안전원에 결과 제출 ※ (붙임2) 학부 신입생 교육 결과 양식 참조

○ **관련법규** (연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)

교육 과정	교육 대상	교육 시간	교육 내용
1. 정기 교육·훈련	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-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-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-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-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2. 신규 채용 등에 따른 교육·훈련	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(계약직 포함)	8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-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-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-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-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-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-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	대학·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(대학생·대학원생 등)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-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-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특별안전 교육·훈련	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-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-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비고: 정기교육·훈련은 온라인강좌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